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266

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:김민석·박희승·송재봉

윤준병 · 정동영 · 서미화

안태준 • 박지원 • 이원택

위성락 · 임호선 · 이연희

김우영 · 김기표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한 질병·부상, 학대,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음.

그런데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 다른 가구구성원이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들을 위한 긴급한 보호·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8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위기상	제2조(정의)		
황"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			
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			
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			
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			
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			
것을 말한다.		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8.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		
	<u>자살을 시도한 경우</u>		
<u>8.·9.</u> (생 략)	<u>9.·10.</u> (현행 제8호 및 제9호		
	와 같음)		